

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5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「보행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에 따라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기능 추가 (안 제2조제2항)
- 나. 평창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·조정사항 (안 제2조제2항1호~3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
 - 1) 입법예고(2021. 11. 26. ~ 2021. 12. 0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 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
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

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회는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평창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능)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기능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위원회는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평창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.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관계법령 발췌

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】

제8조의3(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) ①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(이하 “지역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1.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
2.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지역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20. 12. 22.]

【 지방자치법 】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경제건설국 안전교통과장 심재호
연락처	(033) 330 - 2019